

1. 개정이유

어린이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안전교육 이수로 인정하는 법정교육 명시(안 제3조제3항)

나. 안전교육 이수증 신설(안 제3조제4항, 별지제5호서식)

- 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마련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안전교육 결과의 제출)”을 “(안전교육 실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영제9조제6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으로, 각 교육은 영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해야한다.

1. 「학교보건법」 제9조의 2에 따라 실시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
2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실시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
3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 2에 따라 실시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

④ 영제9조제7항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
제4조 중 “별지 제5호서식”을 “별지 제6호서식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,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안전교육 이수증 번호

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 이수증

교육 이수자	성명	생년월일
	소속 기관명(소재지, 시군구 단위)	
교육 과정 및 일시	이론교육	
	실습교육	

위 교육이수자는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교육기관의 장
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안전교육 결과의 제출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(안전교육 실시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영제9조제6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으로, 각 교육은 영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해야한다. 1. 「학교보건법」 제9조의 2에 따라 실시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2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실시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3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 2에 따라 실시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④ 영제9조제7항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<u><신설></u> 제4조(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)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	제4조(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) ----- ----- -----

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<u>별지 제5호서식</u>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대장을 작 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.	----- -- <u>별지 제6호서식</u>----- ----- -----.
--	--